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대관업무 추진 ②

자료제공/이석규[765kV중부건설소 부장]

3. 대관협의

경과지선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의 대관 협의는 다음과 같다.

3.1 경과지선정 단계

현지개황조사를 시행하고 대관을 직접방문하여 대관자를 수집하였다.

3.1.2 대관(시·군)조사 내용(표 1)

3.1.3 관련 군부대 자료조사

군사시설, 헬기장 및 운항경로, 레이더기지 및 레이더 빔 장애범위 등을 조사하였다.

3.1.4 한국통신공사에 대한조사

이동통신탑, 위성통계소 등에 대한 전파장해 범위 등을 조사하여 한전 전력연구원에 협조를 받아 구체적인 예측계산과 설득으로 경과지를 협의하였다.

3.1.5 영림서 자료조사

국토이용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유지와 사유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립지, 휴양림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자료조사를 시행하였다.

3.1.6 현지개황조사 및 대관조사 등의 자료활용으로 광역D/B를 구축하여 후보경과지 3개를 선정, 경과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1개 경과지에 대한 대관·군에 경과지에 대한 지장

유무 조회 공문을 발송하였다.

3.2 환경영향평가 단계

3.2.1 초안접수

대행업체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서 초안을 접수후 해당관청에 현황판을 소지하고 직접방문하여 초안을 접수시키고 송전선로건설 사업개요를 설명하므로서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유도하였다.

○ 기 간 : 1997. 7. 10 ~ 7. 16

○ 방문기관 : 통산산업부, 경기도, 한강환경관리청, 원주지방환경관리청, 용인시청, 이천시청, 광주군청, 안성군청, 여주군청, 양평군청, 가평군청

○ 주관군청 : 광주군청

3.2.2 주민설명회 개최지(면사무소)협의

주민설명회 개최장소인 면사무소를 직접방문하여 관계 공무원과 설명회 준비를 협의하고 사업설명과 환경영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 기 간 : 1997. 7. 28 ~ 8. 1(5일간)

4. 주민설명

4.1 관련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주민의 의견수렴), 등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및 대관업무 추진

<표 1> 대관(시·군)조사 내용

※ 각 시·군에 따라 자료조사 부서는 다를 수도 있음

관련기관	관련부서	자 료 조 사 내 용
도청	광정과	○ 노행경지도(최근판) ○ 가행광산지역 및 폐광지역(향후 폐광될 지역 포함) ○ 채석장 위치도
시, 군	기획실	○ 시, 군 행정도 ○ 주민성향(과거 집단민원 제기지역)
	문화공보실	○ 관광안내도 ○ 관광지, 사적지, 명승지, 주요문화재 위치도 ○ 국, 도, 군, 시군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위치도 ○ 천연기념물 보호지역(녹지보전지역, 자연생태계 보호구역, 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 해양생태계 보호지역 등) 위치도 ○ 민속신앙지역(성황당, 풍수지리적 명소 등) 위치도 ○ 조수보호지역, 철새도래지역 위치도
	산림과	○ 실험림, 보호림, 보안림구역 위치도(보전림지, 생산공익림지, 준보전림지), ○ 등식물 보호구역 위치도 ○ 채석장 위치도
	도시과	○ 도시계획구역 및 도시계획구역내 용도지구(주거, 상업, 공업, 공원,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 지도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제한구역 위치도 - 도시지역, 취락지구, 시설용지(학교, 병원, 복지시설, 도로, 철도시설)지구 - 휴양지구(관광개발 예정지구) - 시설용지(학교, 병원, 복지시설, 도로, 철도시설)
	지역경제과	○ 집단묘지지구 위치도 ○ 공업단지, 농공단지 위치도 ○ 대규모수면역(호수, 댐) 계획 위치도 ○ 산사태, 사방지 위치도 ○ 위험물 저장소(화약, 유류, 가스 등) 위치도 ○ 각종 개발계획 예정지(택지, 관광지, 공원, 공단 등) 및 개발잠재지역 위치도 ○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계획 위치도
	농림과	○ 목장, 농장, 과수원, 양어장 위치도 ○ 항공방제구역 및 향후 항공방제예상지역 위치도 ○ 하천, 저수지조성계획 위치도
	환경보호과	○ 레저시설(골프장, 스키장, 대단위 위탁시설 등) 위치도 ○ 쓰레기매립장, 먼지, 폐기물(시멘트, 석회 등) 발생지역 위치도
	농산과	○ 특수작물지역(화훼단지 등) 위치도

법 시행령 제6조(설명회의 개최등)에 의한다.

법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군 단위로 시행하여야 하나, 면·부락단위로 의견수렴·설명 등을 시행하므로써 민원예방에 철저를 기하였다.

4.2 환경영향평가의 법 적용 변천

'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에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 3개분야에 협의근거가 만들어 지고 '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90년 6월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에 주민의견수렴 및 사후관리제도가 처음 도입되었다.

'96년 6월 환경영향평가법 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이 구체화되었고 실질적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토록 하였다.

지자체 실시, OECD가입 등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국내외적 여건의 변화로, '97년 3월 7일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여 동년 9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자와 계열회사관계 평가대행자의 대행업

- 무 금지
-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신설
- 협의후 일정기간(5년)내 미착공시 재협의
- 평가서의 전문적 검토,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의 설립 등이다.

4.3 환경영향평가 근거

평가대상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기업 및 범위)의 345kV 이상의 가공송전선로로서 10km 이상과 765kV 이상의 변전소이고 평가항목으로는 법 제5조(환경영향평가분야 및 항목)에 의한다.

- 자연환경분야 : 기상, 지형, 동식물
- 생활환경 : 토지이용, 대기질, 수질, 토양, 폐기물, 소음, 진동 등
- 사회, 경제환경분야 : 인구, 주거, 산업, 공공시설, 교육 등

4.3.1 평가서의 작성

환경부고시 제1995-70호('95. 6. 25)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 가공

송전선로에서의 주요평가항목은 소음·진동, 전파장해, 위락·경관이다.

4.3.2 주요평가내용

- 소음·진동
 - 소음원 조사 및 저감대책(거리이격, 완충녹지, 방음벽설치 등)
 - 소음·진동을 고려한 시간대별 시공계획
 - 폭약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진동예측 및 저감대책
 - 차량, 항공기 등 이동오염원(소음·진동)의 변화량 예측 및 대책
 - 공장설비 등의 고정오염원 배치계획
- 전파장해
 - 전파장해요인 검토
 - 전파장해정도와 저감대책(공동수신시설 설치계획 등)
- 위락·경관
 - 기존 경관지역의 활용방안 및 지역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변화로 인한 영향의 정량적 평가와 대책

▶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전력기술문화 창달 시리즈 ①

감전사고를 예방합시다!

하절기 특히, 우기철 감전사고를 예방하여 우리 전력기술인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명량하고 밝은 생활이 되도록 다음의 사항을 생활화 합시다.

1. 전기설비의 점검 철저
2. 전기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의 정비 철저
3. 전기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의 위험부에 위험표시 부착
4. 전기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의 필요한 부분에 보호접지 실시
5. 노출된 충전부분에 절연방오구 설치 및 사용
6. 전기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할 것
7. 유자격자 이외의 자는 전기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에 전기적 접촉을 금지
8. 작업 및 관리자에게 항상 안전교육 시행
9. 우기시에는 급급적 전기작업을 하지 말 것
10. 젖은 복장·손 등으로 전기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를 운전 또는 만지지 않도록 할 것
11. 전기사용 설비 및 기계·기구에 물건 등을 걸쳐 놓거나 올려 놓지 않도록 할 것
12. 적정용량의 전선을 사용할 것
13. 전기고장이 발생되거나 발견된 경우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토록 홍보하고 교육시킬 것